

「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정례회
제8차 산업건설위원회(2003. 12. 18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3. 12. 13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3. 12. 13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2호)
- 다. 2003. 12. 18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건축과장 안점판)

가. 제안이유

- .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정 시행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세분화(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)
- . 대지 안의 조경기준 중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경사지붕이 4분의3 이상인 경우 조경기준 완화와 상업지역 안의 소규모 건축물과 농업용 시설 및 바다와 연접한 소규모 건축물 조경 제외(안 제20조)
- . 건축법에 의한 견폐율, 용적률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삭제함(안 제24조 및 제26조)
- .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정함(안 제30조의2)
- .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삭제함(안 제31조 내지 제33조)
- . 법 조항 오자를 바로 고침(안 제44조)

3. 법적근거

- . 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
- 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동법률시행령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.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정 시행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
- 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절차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, 대지 안의 조경기준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며
- .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사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며,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조례(경남도)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(안)을 개정하는 것으로
- . 관련 상위법규와의 관계, 입법체계, 행정절차이행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기간(2003. 11. 10~11. 30(21일간)중 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4건은 반영하고 안 제20조(대지 안의 조경) 제1항 단서의 옥상부분 조경면적 산정 기준 완화부분의 조경면적 20%공제에서 20% 이상 더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완화의견에 대하여는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미 반영하였으나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: 없음